

EC共同農業政策과 會員國間의 利害關係

金 庚 亮

建國大學校講師, Ph.D. (農業經濟學)

- I. 緒論
- II. 關稅同盟
- III. 共同農業政策
- IV. EC共同農業政策에 대한 分析
- V. 要約 및 結論

I. 緒論

제2차 世界大戰 이전까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中心地였던 유럽大陸의 霸權掌握을 위해 역사적으로 敵對關係에 있던 유럽내 각국들은 두 번에 걸친 大戰爭을 치른 후 계속되는 戰爭의 위험 속에서 相互國家間의 새로운 關係改善을 위하여 유럽共同體(European Community ; EC)의 출현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政治的 構想에 따라 1951년 4월 18일 (Paris 條約) 유럽내에서의 새로운 軍事的 對決을 피하려는 의도로, 그리고 새로운 戰爭의 制御裝置로서 軍備擴張의 근간이 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를 출범시키게 되었다.¹ 출범 초기

에는 각국간의 정치·경제적 利害關係와 成功可能性에 대한 이견으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兩大勢力으로 등장한 美·蘇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유럽” 또는 유럽聯邦構成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분야를 포함한 완전한 共同體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상의 진척으로 1957년 3월 25일 (Roma 條約) 共同市場經濟體制를 근본으로 하는 유럽經濟共同體(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가 위의 6개 會員國에 의해 결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원자력共同體」(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ratom)가 결성됨으로써 3개의 共同體組織을 갖게 되었으며, 그중 EEC가 가장 包括的 業務範圍를 갖고 있었다. 1967년 7월에 위의 3개 執行機關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유럽共同體」(European Community ; EC)로 발전되었다.

이후에 유럽 각 周邊國家들의 EC 加入申請이 있었음에도 會員國間의 意見不一致로 加入이 지연되다가 1973년 1월에 영국, 아일랜드, 텐마크가 가입하고(EC-9), 1981년 1월에 그리아스(EC-10), 그리고 1986년 1월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追加로 가입하여(EC-12) 명실상부한 유

¹ 加盟國 : 서독,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유럽共同體로서의 힘과 規模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共同體도 그 규모가 커지면서 회원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유럽聯邦 또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政治的 目標보다도 표면화됨으로써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우선 로마條約에 명시된 유럽經濟共同體의 設立目的을 보면 ① 域內 關稅撤廢, ② 對外共同 關稅賦課, ③ 勞動力과 資本의 域內自由移動, ④ 共同農業政策의 實施, ⑤ 社會政策에의 協力 및 會員國間의 經濟政策의 유대 강화를 主軸으로 삼고 있다.

EC經濟政策의 기본이 되는 關稅同盟은 共同農業政策과 마찬가지로 12년간의 과도기적 試驗期間을 거쳐 1968년 7월부터 完全實施되었다.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關稅同盟과 勞動, 資本, 商品의 自由移動을 기반으로 하여 각 회원국의 非效率的인 農業生產體制를 개선하고 域內에서의 자유로운 農產物需給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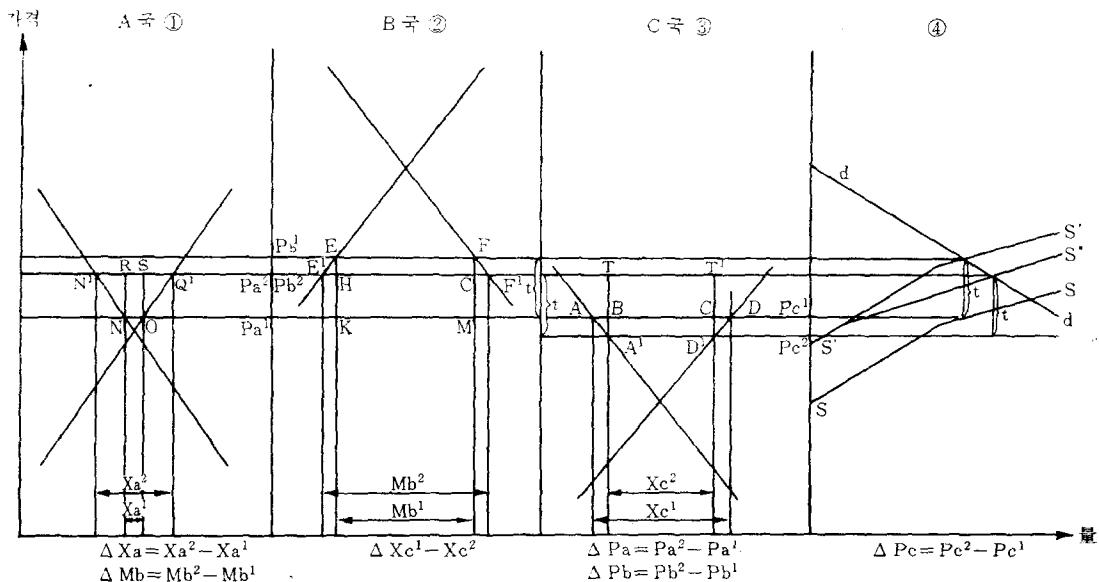
적으로 지금까지 共同體內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共同農產物價格決定 및 共同基金運營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각국의 상이한 農產物生產構造, 需給條件에 따라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農產物價格支持政策에 의해 가속화되어온 生산과잉으로 수년째 共同財政에 赤字危機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내의 重要部門으로 인식되고 있는 共同農業政策(CAP)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간의 성과 및 각 회원국간의 利害對立關係,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分析的 이해를 돋고자 한다.

II. 關稅同盟

EC經濟政策의 근본이 되는 關稅同盟(Custom Union)의 목적은 회원국간의 物資需給을 위한 수출입에서의 關稅의 賦課를 폐지하고 세삼국으

그림 1 관세동맹 결성으로 인한 효과분석



로부터의 輸出入에 共同關稅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체내의 生産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關稅同盟은 共同農業政策 특히 農산물 수급 정책에 기본적 조건이 되므로 이의 실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그림 1>을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자.

<그림 1>에서 A, B, C, 3개국의 供給 및 需要函數는 편의상 不變固定換率에 따라 1개국의 價格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1-4>에서는 總輸出供給函數와 總輸入需要函數를 나타내었으며, 두函數曲선의 交叉點은 세 나라간의 交易量과 交易價格을 결정하게 된다. 3개국 중 A국과 C국은 輸出國으로서 供給을 나타내며, B국은 輸入國이 된다. B국의 輸入需要函數 dd 와 A, C국의 輸出供給函數 SS 의 交叉點은 自由交易에 있어서의 交易價格과 交易量을 나타낸다. B국이 一般關稅 t 를 賦課時 輸出供給函數는 $S'S'$ 가 되고 B국의 輸入需要曲線 dd 와의 交叉點은 B국의 國內價格 P_b^1 와 실질적인 輸入量 M_b^1 을 결정한다. 輸出國들은 수입국 B국의 關稅 t 때문에 $P_a^1 = P_c^1$ 으로 輸出하게 되고 輸出量도 X_a^1 과 X_c^1 로 결정된다. 이제 A국과 B국이 B국의 관세율로 共同關稅를 부과하여 關稅同盟을 맺을 때 輸出供給函數는 $S'S''$ 로 변하게 된다. A국의 國內價格이 國際市場價格보다 낮을 때 A국은 關稅免除로 관세부담을 가진 C국보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며 이때의 價格은 關稅同盟의 共同價格인 $P_a^2 = P_b^2$ 를 나타내고, C국은 공동관세 때문에 P_c^2 로 수출하게 된다. 따라서 B국의 輸入量은 ΔM_b 만큼 감소가 되며, A국의 輸出量은 ΔX_a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에 비해 C국의 輸出量은 ΔX_c 만큼 감소된다. 여기서 ΔM_b 는 교역을 통한 이득(trade creation), ΔX_b 는 관세동맹으로 인한 交易에서의 損失(trade diversion)로 나타

난다. B국의 厚生經濟的 效果는 $G_b = EFF^1E^1 - (EFMK - TT^1D^1A^1)$ 이고, EFF^1E 는 소비자 잉여와 生産者損失의 차이를 나타내며 ($EFMK - TT^1D^1A^1$)는 수입으로 인한 变경된 支出額을 나타낸다. A국에 있어서의 후생경제적 효과는

$$G_a = -\Delta P_b(X_c^1 + \Delta X_c) + 1/2\Delta P_b\Delta X_c + 1/2t(\Delta M_b + \Delta X_c)$$

가 된다. 앞의 두 항은 正의 값을 가지므로 관세동맹의 후생경제적 효과는 交易을 통한 利得이 損失보다 클 때 긍정적으로(positive) 나타난다.

關稅同盟外 제 3국인 C국에 대한 후생경제적 효과는

$$G_c = ADD^1A^1 = \Delta P_cX_c^1 + 1/2\Delta P_c\Delta X_c$$

로서 당연히 否의 값을 갖게 된다. 共同對外關稅가 低關稅率을 가질 때 輸入國인 B국의 후생경제적 효과는 不確實해 진다.

반면에 關稅同盟內의 輸出國(A국)은 관세동맹 외의 輸出國(C國)보다 명백하게 유리함을 갖게 되며 自國의 후생경제적 효과는肯定的(positive)이 된다. EC經濟政策의 근간이 되어 1968년 이후 전면 실시되어 온 關稅同盟의 效率性을 평가하기에는 그 資料算定 문제와 共同體外 제 3국들의 關稅率의 差異 등으로 매우 어려우나 共同體 전체의 交易을 통한 利得이 損失보다 크다는 研究分析論이支配的이고 후생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여겨지므로 이의 否定的(negative)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시행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C내 會員國間의 交易은 關稅同盟 체결 이후 1958년도 全體交易量의 34%에서 1982년도의 50%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EC가 1982년도 세계교역량의 32%를 占有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交易量임을 알 수 있다.

III. 共同農業政策

로마條約에 의한 유럽經濟共同體의 結成 후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이 실시되고 있었다.² 당시 각 회원국간에는 勞動集約的 零細經營形態와 生產構造, 農家經濟상태 등의 현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食糧安保의 중요성, 共同體內의 農산물의 豐產적 生產, 수급 비중에 비추어 공동의 步調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農業部門의 공동보조 없이는 共同體內의 經濟的 統合이 불가능하기도 하였다. CAP는 價格市場政策이 주축을 이루며 農業構造政策, 農村社會政策은 共同政策으로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構造社會政策은 각 회원국의 特性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보조에 맞추어 각국별 나름대로 실시되고 있다.

1. CAP의 目的 및 原則

CAP의 目的是 共同體內의 農業기술 향상과 生產要素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① 農業生產性의 向上, ② 農業부문의 生活水準保障, ③ 農產物市場의 安定 ④ 農產物 供給의 安定, ⑤ 적정한 消費者價格의 維持 등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基本原則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CAP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① 農產物市場의 域內單一化와 共同價格의 적용, ② 會員國特典(Community Preferences)을 통한 農산물의 역내의 우

² 合意된 때까지도 각 會員國間에는 相異한 農業構造와 農產物價格 등 각기의 農業政策이 시행되고 있었다.

선적인 교역과 共同市場의 보호, ③ CAP의 財政조달을 위한 유럽農業指導 및 保證基金(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 EAGGF)을 조성하고 각 회원국의 連帶財政(financial solidarity)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2. 農產物市場價格政策 및 共同通貨政策

共同體內의 價格安定과 市場機能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農產物市場價格政策은 共同市場에서의 安保의 重要性 및 自給率의 達成程度 그리고 生산물 자체의 보관성 및 加工의 必要性 등의 特수성과 生產物 市場別로 다양한 政策手段과 다양한 政策價格를 갖고 있으나 이를 대별하면 아래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³

가. 價格支持

共同體內의 農業生產物 중 약 70%가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주요 穀物과 쌀, 설탕, 우유, 유가공품, 쇠고기, 양고기 등은 역내의 支持價格과 對外共同防禦로서 保護되며 매년 介入價格을 결정하여 市場價格이 最低價格 이하로 하락할 때 대처한다. 돼지고기, 야간의 果菜類,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保管 및 釀造補助 정도의 미미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나. 對外保護

域內 약 25%의 農산물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단지 對外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共同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共同保護를 취하며 이에는 대개 基本食糧이 아니거나 상대적으로 生產期間이 짧고

³ CAP의 價格政策手段와 生產物 市場別 政策手段에 대해서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海外農業資料 1986.3.3 “EEC共同農業政策의 方向轉換摸索”과 農協조사월보 1984. 1. “EC의 共同農業정책과 農業보호”를 참조하기 바람.

재배면적에 제약을 받지 않는 농산물로서 과채류 인부와 꽃, 계란, 닭고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 追加生產補助

域內農產物의 約 2.5%가 이에 속하여 市場組織으로부터 追加生產補助를 받는다. 이에는 地域的, 量的으로 역내에서의 생산이 충분치 못한 투팅소맥, 올리브油 등과 國際協定에 제약을 받는 담배, 일부 油脂作物에 한하여 대부분 消費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필수품이다. 이러한 농산물의 生產者 등은 이러한 追加補助로 일정한 소득을 保障받게 된다.

라. 일률적인 補助

生產物 또는 生產面積에 대하여 일률적인 補助를 해 주는 것으로서 이에는 特定農產物인 棉實, 亞麻, 大麻, 호프, 乾草, 누에, 種子用의 穀類 등이 속하며 域內 總農產物生產의 約 1% 정도가 해당이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각 農產物別로 적용되는 제각기 一定한 價格들이 있으며 <그림 2>는 穀類에 적용되는 價格體制를 이용하여 이의 이해를 돋고 있다.

매년 共同體의 農業閣僚理事會(Agricultural Council)는 執行委員會(Commission)의 제안을 받아 후년도 共同體內의 農產物價格을 決定하게 된다. 이 價格決定에 따라 역내 농민들의 農業所得과 消費者價格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需要와 供給 양면에서 모두 주목을 하게 되며, 각 회원국간의 각 農產物별 自給度와 生產構造의 차이에 따른 利害關係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의견대립이 價格決定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다.

위와 같은 農產物價格政策 등의 域內共同政策과 統計事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會員國間의 고정된 共同換算單位(European Accounting Unit)가 이용되었으나, 계속되는 각국간의 經濟力變化와 물가상승률의 차이 또 이에 따른 각국 通貨의 換率變化로 共同單位의 안정적 실행을 기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1979년 3월 더욱 견고한 형태의 유럽

그림 2 穀類에 있어서의 價格體制

標準價格(Targe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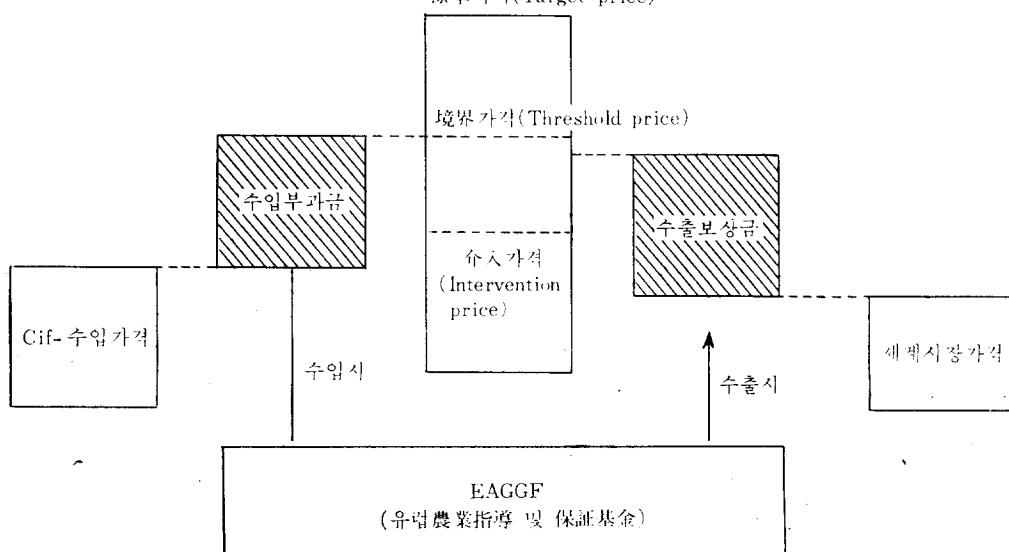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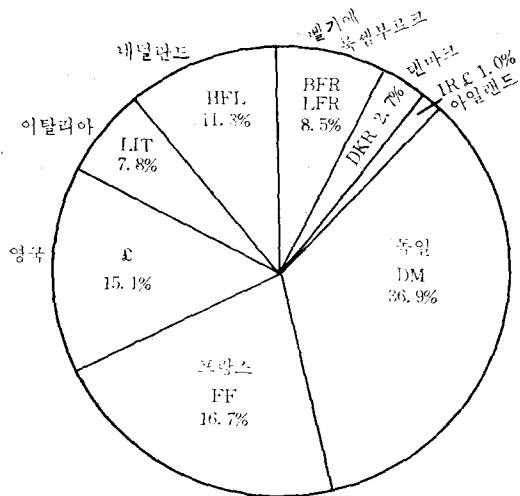


그림 3 각국 통화의 ECU의 구성비율(1983. 5. 18일 이후)



通貨制度(European Monetary System ; EMS)가 도입되었고, 새로운 共同通貨單位(European Currency Unit ; ECU)가 도입되었다. 이 ECU 通貨單位制度는 會員國間에 換率差에 의한 經濟的 영향을 막고 안정된 經濟活動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그 근본은 각 회원국간의 通貨를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 比率的으로 구성해 놓은 하나의 通貨바스켓이라고 할 수 있다.⁴

ECU는 一般換率 ECU와 農業換率 ECU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農業換率 ECU를 따로 정해 두는 것은 農產物價格이 일반경제의 심한 변화에 영향받는 것을 막고 農業部門의 生產 및 所得安定을 기하기 위함이다. 農業換率(Green Rate)의 調整期間 및 조정방법은 一般換率 變化에 기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一般換率과 農業換率의 차이를 조정하고 경제변동에 따른 平價切上國의 農產物 實質價格의 변동과 平價切下國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줄인다.

⁴ 1984년 말 1ECU當 集中基準率은 2.24마르크(독일), 6.87 프랑(프랑스), 14.03리라(이탈리아), 2.53길더(네덜란드), 44.9프랑(벨기에), 0.5860파운드(영국), 0.7257파운드(아일랜드), 8.14크로네(덴마크), 87.48드라크마(그리스).

즉 通貨價值의 변동에 따른 農產物 供給上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換率調整制度(Currency Compensation System: Währungsausgleichsystem ; WAG)가 도입되어 있다. 一般換率과 農業換率과의 차가 커지거나 특별한 경제적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農業閣僚理事會에서 의견을 통합하여 개정하게 된다.

換率調整率은

$$WAG = 100 - \frac{W}{U} \cdot 100$$

W=一般換率

U=農業換率

이때 平價切上國 : $W < U \quad WAG > 0$

(예 :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平價切下國 : $W > U \quad WAG < 0$

(예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平價不變國 : $W = U \quad WAG = 0$

(예 : 덴마크)

이와 같은 換率調整效果는 會員國間에 자유스런 무역으로 農산물이 會員國間의 國境 통과시에 발생하게 된다.

양국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實質價格의 差額을 換率調整賦課金으로 징수하거나 換率調整補助金으로 지급함으로써 양국의 農산물가격이 경제적 변동에 의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피해 받는 것을 막고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制度는 EC會員國間에만 通用되는 것이며, 非會員國인 世界市場으로부터의 輸出入에는 共同關稅를 부과하고 있다. EC는 자체내의 農產物流通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交易量도 상당하여, 1980년에는 總世界 農產物輸入量 중 25%를 世界市場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제 1위의 農產物 輸入國團體로 나타났다.

EC의 輸入農產物로서는 EC內에서 生產能力이 제한되어 있거나 생산이 불가능한 열대性 農產物 및 工業原料 그리고 家畜飼料인 옥수수, 콩, 타피오카 등이다. 반면에 世界 農產物輸出에서도 總輸出額의 11.5%를 점할 정도로 큰 輸出團體이며, 주로 유제품, 畜產物, 穀類 등이 수출된다. 1983년도에는 EC 전체의 農產物交易에서 세계 시장으로부터 약 236억 ECU의 貨易赤字를 나타내었으나, 그간 農產物價格支持政策 실시 이래 계속적이고 급속한 生產增加로 輸出量과 自給率이 크게 향상되어 왔다.

3. 農業構造政策

EC內 각국간의 生產條件, 經營規模, 生產技術 및 방식, 농민의 질적·양적 차이, 農業外條件 등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競合的으로써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는 共同農業政策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며, 共同體의 發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회원국간에 生產構造上의 競合的 品目은 生產過剩에 따른 價格支持의 어려움을 계속 던져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支持價格과 生產過剩問題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신규가입으로 生產物別로 더욱 심화되었다. 共同體 全會員國들을 대상으로 한 農業構造政策은 1968년 말 당시 農業擔當執行委員이었던 맨스홀트(Mansholt)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맨스홀트는 일명 맨스홀트 計劃(Mansholt-Plan)으로 불리는 종합계획안을 통해서 農業構造의近代化와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각 회원국은 독자적인 構造政策을 실행하여 오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회원국내의 農業構造改善策을 統合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共同基金을 바탕으로 이의 事業支援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農業構造政策은 ① 農民教育과 生산의 합리화를 위한 諮問活動 및 技術革新과 이의 실행에 필요한 農家補助 및 低利融資, ② 農산물의 판매 및 加工에 대한 지원, ③ 地域間 不均衡의 조정으로서 地理的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農가를 지원하고 下部構造를 개선하여 地域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農業構造政策은 대개 경제적·사회적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綜合地域開發計劃으로 수행되며, 이때 그 재정지원은 農業指導基金(EAGGF)과 地域基金(Regional Fund), 社會基金(Social Fund)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農業構造政策에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는 構造改善을 통한 農外所得增大와 零細小農의 轉業 및 농업규모 확대에 의한 企業農化政策은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또한 정부의 정치적 변동에 크게 좌우되므로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현재 EC내의 農業構造政策은 이와 같은 어려움 외에도 1980년대초 세계 경제의 침체와 실업 그리고 農產物過剩生產 등으로 構造政策의 변환이 요구되어 왔다. 1985년 3월 新農業構造政策이 채택되기까지는 農가의 현대화, 農產物加工 및 流通構造의 개선 그리고 지중해 연안지역 보조계획, 불리한 지역 등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 등이 주를 이루었다. 농업 구조의 效率性 향상을 위해 채택된 新農業構造政策은 두 개의 기본원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리한 위치에 놓인 農가경제의 재고려, 둘째 과잉생산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生産성 향상이다. 두 가지 원칙의 실행을 위하여 몇 가지의 조치가 첨부되어 있다.

—營農을 목적으로 하는 投資에의 제한적 보조
—젊은 農民層에 대한 創業補助와 營農投資에

表 1 각 회원국별 EC공동재정에 대한 부담률

단위 : %

	독일 GE	벨기 B	덴마크 DK	프랑스 F	아일랜드 IRL	이탈리아 I	룩셈부르크 L	네덜란드 ND	영국 UK	그리스 GR
1980	32.71	4.56	2.62	24.64	0.86	10.87	0.20	6.04	17.53	
1981	27.76	5.51	1.95	19.92	0.85	14.06	0.15	7.14	21.24	1.42
1982	26.05	5.19	1.92	20.44	0.91	13.06	0.12	7.13	23.37	1.81

資料 : 서독 재무성, Finanzbericht der EG, 1984.

대한 추가 보조

—각 회원국별 農場改善 보조

—農業近代化를 위한 農民對象의 職業訓練

—산간, 취약지구 및 환경보존지구에 대한 보조

—地域別 綜合開發補助

—農產物 加工 및 流通構造 改善에 대한 보조
등이다.

4. EC의 連帶財政

共同農業政策에 있어서 共同基金에 의한 連帶財政(financial solidarity)管理는 CAP가 실시될 당시부터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되어 있었으며, 그 財政運營方法은 그동안 많은 修正과 改善을 거쳐 왔다.

최초 6개국이 출범시에는 각국의 국민총생산(GNP)에 비례하여 각회원국에 직접 納入負擔金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1971년 이후에는 각會員國이同一한 부가가치세율

(value-added tax rate)에 의한 算定基準方式을 適用하여 1%의 부가가치세 상한을 이하로 부담금을 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즉 각회원국간의 經濟力에 비례하여 共同基金造成을 위한 할당액이 정해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198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신규가입과 지출부문의 확대로 부가가치세율 1% 이상으로의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C내 각국별 連帶財政에 대한 부담률을 보면 각국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각회원국간에 經濟的 利害對立이 생기고 있다. <表2>에서 EC내의 재정수입·지출 항목을 보면 대부분의 수입부문이 부가세와 관세수입에 의해 조성되는 반면, 지출의 약 60~70%가 農業保證基金으로 사용됨으로써 輸出補助金制度 및 支持價格制에 의한 農業부문에서의 지출이 EC共同財政支出部門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表 2 구주공동체의 재정

단위 : %

회원국 재정부 액	수입					지출							회원국 특別 보조금	
	회 원 국 경 제 부 액	세 수 입 부 문	생 산 부 문	농 산 부 문	물 류 부 문	EAGFL		지 정 여 债	사 정 여 債	연 기 금	개 보 조 금	행 정 비		
						보증기금	지도기금							
1978	44.5	3.4	15.6	36.6	75.8	1.5	2.2	4.9	2.0	3.3	4.3	5.8		
1979	49.0	3.2	11.7	36.1	74.7	1.7	3.7	5.5	2.1	3.2	4.0	5.2		
1980	47.9	3.1	10.1	38.9	71.5	2.0	7.1	5.0	2.0	3.7	3.6	5.1		
1981	53.4	2.8	7.2	36.6	63.9	3.0	10.4	4.2	1.8	4.6	4.0	8.2		
1982	55.9	3.6	8.7	31.8	62.7	3.7	14.0	5.0	2.1	3.9	3.5	5.3		

자료 : EC 집행위원회, Finanzberichte über den EAGFL, 1984.

따라서 농업생산에서의 有利性을 갖는 소위 農產物 輸出國과 반대 입장에 있는 輸入國 사이에는 財政負擔 및 보조금 혜택의 차이로 이해 대립이 생기고 있다.

輸出補助金支給은 EC內의 農產物 支持價格이 國際市場價格보다 월등히 높은 테에서 기인한다. EC내의 농업생산자를 위한 保障價格制度의 실시는 공동체내 農業生產의 급진적 향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영농의 專門化와 技術化로 유도하는 효과를 보였다. 농산물 생산량이 EC의 自給量을 초과할 때 EC내의 高市場價格과 國際市場價格間의 차이를 輸出補償金으로 農業保證基金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連帶財政 부담은 중요 농산물의 자급이 달성된 1970년대 말 이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輸出補償金 支給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산물별 자급률이 100%가 넘는 품목에서 低價格인 國際市場價格과 EC內 市場價格과의 差額을 보조받게 되는 것이며, 주로 乳製品과 畜產物, 설탕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농산물 자급률이 100% 이하인 경우 이의 수입을 위해 격렬한 國際市場價格과 EC價格과의 差額을 輸入賦課金으로 부담하게 되어 각 회원국별 각농산물의 自給度는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수입부과금과 수출보상금제의 운영 방법은 <그림 5>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共同連帶財政運用에 의해 발생되는 農產物 輸出國과 輸入國間의 得失 문제는 EC가 自由貿易特典을 원칙으로 하므로 EC를 하나의 國家的 개념으로 보면 취급해야 한다.

그리고 共同連帶財政運營에 있어서 EC내 각 국별 農產物生產에 따른 輸出補償金 및 輸入賦課金의 차이가 主因이 된 회원국간의 利害得失

表 3 EC內各農產物의 自給度, 1984/1985

	GE	B/L	DK	F	IRL	I	ND	UK	GR	EC-10
곡류	100	66	131	217	97	82	33	132	119	128
설탕	132	236	281	218	153	83	167	58	75	132
포도주	56	5	—	132	—	149	—	0	126	114
쇠고기	119	127	363	121	601	67	196	92	37	112
송아지고기	87	145	383	82	118	76	259	69	73	103
돼지고기	134	118	173	115	419	63	475	67	50	130
버터	231	81	55	132	540	—	40	125	—	106

자료 : EC집행위원회 통계국 : (EUROSTAT) : 「농업통계연보」 1986.

表 4 연대재정에 대한 회원국간의 기여정도

단위 : 백만 ECU

	GE	B/L	DK	F	IRL	I	ND	UK	GR
1979	-1430	610	380	-78	545	534	288	-849	
1980	-1526	439	327	431	650	737	454	-1512	
1981	-1750	568	285	597	586	778	191	-1422	
1982	-2086	509	295	-19	732	1616	304	-2036	685

자료 : 서독재무성 : *Finanzbericht der EG*, 1984.

(net balance)의 정도는 <表 4>와 같이 집계되고 있으며, 지지가격제도에 따른 수출보상금 지급으로 農業生產의 계속적인 증가는 農業保證基金支出比重의 超過로 인한 연대재정기금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어, 회원국간에 이의 개선안이 계속하여 회의되고 있다.

英國의 연대재정으로 인한 적자는 매년 타회원국간의 협상으로 特別補償金額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또 하나의 연대재정 적자국인 西獨은 국내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외부문이 EC內 關稅同盟으로 인한 전체 재정의 수지 흑자를 나타내어 농업부문의 적자를 상쇄하고 남음으로써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連帶財政制度를 인내하고 있다.

<表 4>의 표면적인 經濟利得과 EC豫算制度에 대한 會員國間의 상이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現 EC制度를 끌고 나가는 것은 EC의 주축이 되는 英國, 프랑스, 西獨과 각회원국간의 政治的力學關係, 歷史的傳統 등 경제외적인 요인이라

表 5 EC의 농업기본자료, 1984

	단위	GE	B	DK	F	IRL	I	L	ND	UK	GR	EC-ID	
총인구(1982)	100	61.4	9.9	5.1	54.7	3.5	56.8	0.37	14.4	56.4	9.9	272.4	
농업총생산/ 국내총생산	%	1.8	2.6	4.7	4.0	10.7	6.4	3.1	4.4	2.1	15.5	3.6	
농업종사자/ 전노동력	%	5.4	2.9	8.4	7.8	16.8	12.1	4.8	4.9	2.7	28.5	7.5	
평균영농규모 (1980)	ha	14.4	12.3	23.8	23.3	22.6	5.6	25.1	13.7	63.7	3.7	13.2	
축산영농 의 가구 당 가축 수(1984)	소전체 꽃 소 돼지	마리 마리 마리	31 13.9 47.8	43 20.1 151.8	55 28.3 179.4	38 16.8 53.6	32 17.8 114.5	15 7.2 9.7	66 27.4 51.1	67 40.2 283.7	78 57.1 277	7 3.1 16.0	33 15.7 42.0

자료 : EC집행위원회 :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86.*

하겠다.

IV. 共同農業政策에 대한 分析

EC의 共同農業政策이 실시된 이래 공동체내의 農產物 生産性은 지속적으로 향상됨으로써 増產政策에 성공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4>에서는 1963년부터 1976년까지의 農業生産物, 農業生産性과 生産要素投入의 전개과정을 각회원국과 EC 전체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增產效果는 특히 農產物 價格支持政策에 힘입은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農家經濟의 향상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農家所得이 1968년부터 1978년까지 매년 2.8%의 실질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1979년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實質所得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一般經濟의 침체와 生産要素價格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83/84년도에는 實質所得이 정체되어 0%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1960년 이후 계속되던 經濟發展에 힘입은 一般產業部門의 성장은 農業部門의 많은 労動力を 흡수함으로써 農家規模 확대에 큰 효과를 보였다. 1960년 EC 6개국의 農業從事者數는 1,520만 명이었으나 9개국으로

확대된 1973년도에 820만 명, 그리고 10개국으로 확대된 이후인 1983년도에 800만 명으로 감소되어 1983년 당시의 農業從事者는 전체 EC 취업인구의 7.5%로 나타나고 있으며, 戶當 경지 규모는 회원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表 5 참조)。

그리고 農產物價格 支持政策 실시 이후 都農間 所得隔差의 확대, 農業部門內의 각 회원국간 生產物別, 地域間 그리고 經濟規模別 所得隔差는 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⁴

<表 6>에서는 각 회원국간의 農業所得을 비교하였다.

<表 6>에 의하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農家當 實質所得이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獨逸, 英國, 룩셈부르크는 平均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平均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아주 낮은所得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혁신 및 생산요소의 집중적인 投入으로 獨逸, 벨기에, 네덜란드는 계속적인 소득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에, 農業 후진국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實質所得 수

⁴ EC내 類型別 所得隔差에 대해서는 金日善, “EEC 공동농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농업경제연구』, 제26집 (1985. 12 153~165) 참조

그림 4 구주 공동체내의 농업생산물, 농업생산물, 요소투입의 발전

(1963년=1) a : 농업생산물 b : 농업생산물 c : 요소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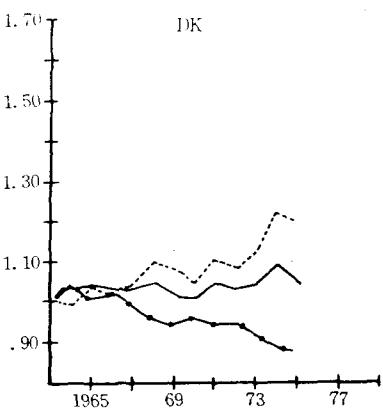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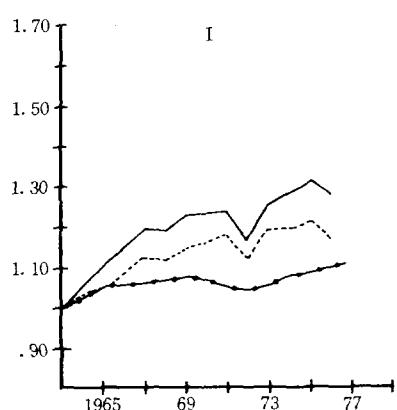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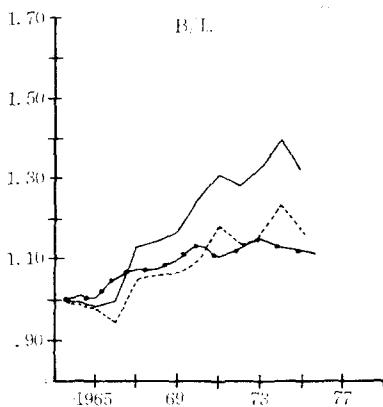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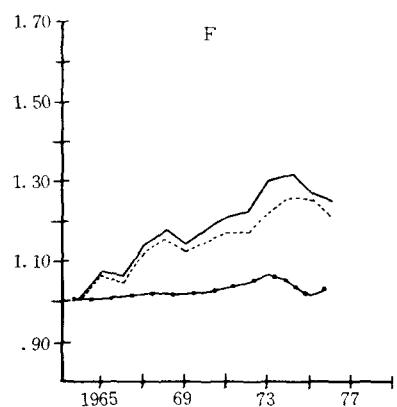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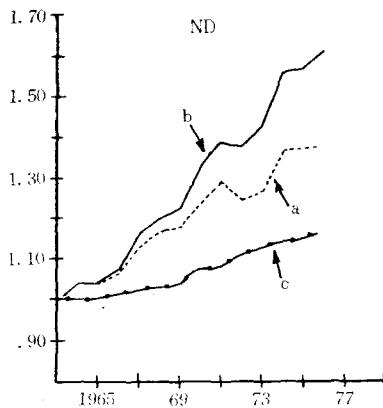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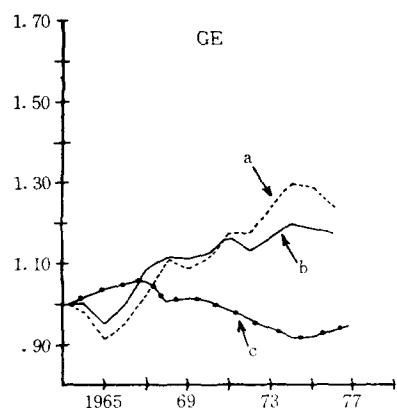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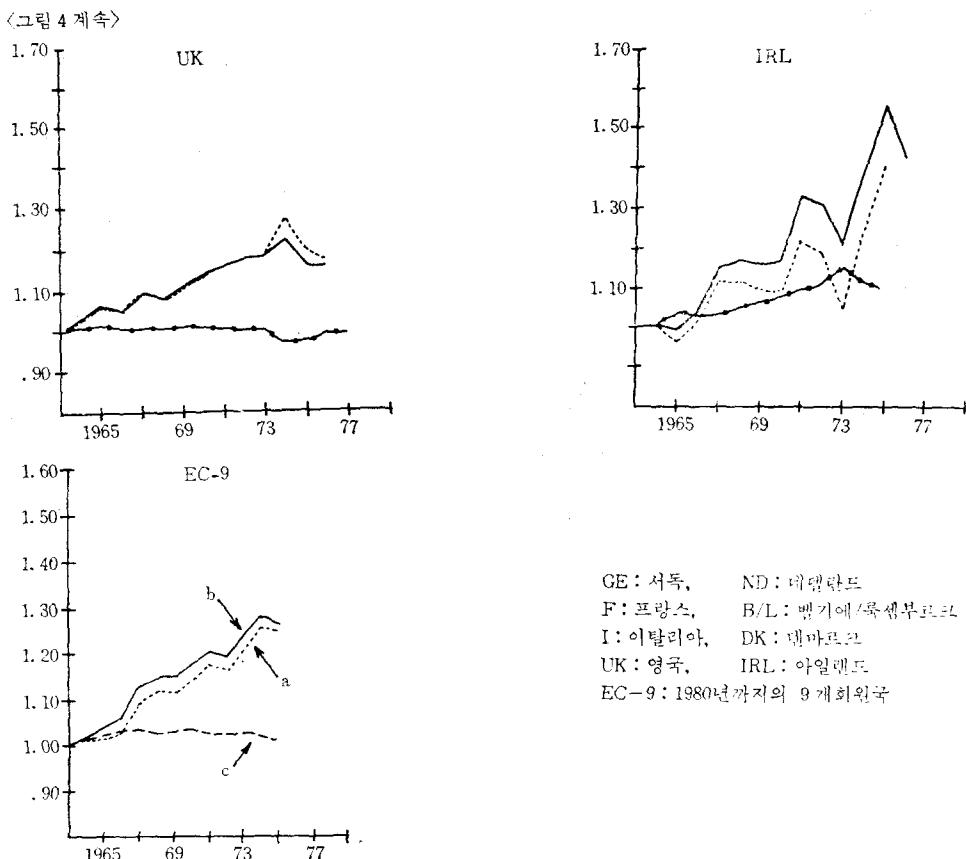


그림 4 <계속>



資料: Behrens, R. und H. De Haen, *Vergleich der gesamten Produktion, des aggregierten Faktoreinsatzes und der Produktivität in der Landwirtschaft der EG-Länder 1963-1976*, 1980, Göttingen,

준이 경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實質所得이 높은 네덜란드는 1984년도 EC 10개국 평균치보다 2.8배의 높은 소득을 보이면서 소득이 가장 낮은 그리스보다 農家當 實質所得이 9.5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현행 價格支持政策에서는 規模의 經濟性을 나타내는 大規模農家에게 所得에서의 상대적 유리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가격정책이 所得分配에 있어서의 不均衡을 유인하므로 이와 같이 EC내 類型別 所得隔差에 대한 대안으로써 直接所得補助制度와

缺損支拂(Deficiency Payment)制度 및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直接所得補助制度는 당초에 價格支持政策의 교체적 방법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며, 일정 수준까지의 農家所得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의 한계성에 비추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된 바 있으나, 1979년 이후 經濟沈滯로 인한 財政支援의 制限要因에 의하여 이의 실행이 유보되고 말았다.

缺損支拂制度는 國際市場價格과 境界價格(threshold price)을 중심으로 생산자에게는 標準價

表 6 EC內會員國別 實質農業所得의 비교

	GE	B	DK	F	IRL	I	L	ND	UK	GR	EC-ID
1975/76	87	150	168	82	107	59	113	179	154	—	100
1980/81	105	188	152	104	71	60	137	229	98	—	100
1981/82	109	206	189	94	81	53	130	264	112	38	100
1982/83	125	201	182	94	75	47	151	249	108	31	100
1983/84	120	211	164	86	78	50	118	281	120	29	100

자료 : 서독 농림영양부 : *Agrarbericht*, 1986.

格과 같은 일정한 價格線을 유지시켜 주고 消費者에게는 國際市場價格 수준의 低價格을 제공하는 方法으로서 그 差額의 EC 同財政에서의 부담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그로 인한 所得分配效果의 취약성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림 6>에서는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價格政策을 포함한 세 가지의 農家所得支援政策 방안의 效率성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A는 交易을 통해 발생된 生產者 利得(剩餘)를 나타내고 있으며, B는 交易에 대한 정책의 임의의 실시로 인해 발생된 消費者 損失을 나타내고 있다. EC에서 CAP가 시작될 당시 農產物價格 支持政策을 채택한 이유는 당시 EC内の 農產物 自持

給度가 낮아서 輸出入賦課金에 의한 基金收入이 생길 수 있었고 輸出補償金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財政負擔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自給度가 100%를 넘어서 輸出補償金의 지출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生產要素配分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共同基金의 枯渇을 초래하게 된다. 缺損支拂制度는 英國의 福祉(Common Wealth) 政策에 의하여 自給度가 100% 미만일 때 높은 國庫부담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의 생활보조로 실시되었던 정책이며, 이것은 價格支持政策보다 要素配分上의 손실이 B만큼 적게 나타나고 있다. 直接所得補助制度는 소비자들이 제도의 財政을 부담하더라도 그 要素配分 損

그림 5 수입부과금과 수출보상금제의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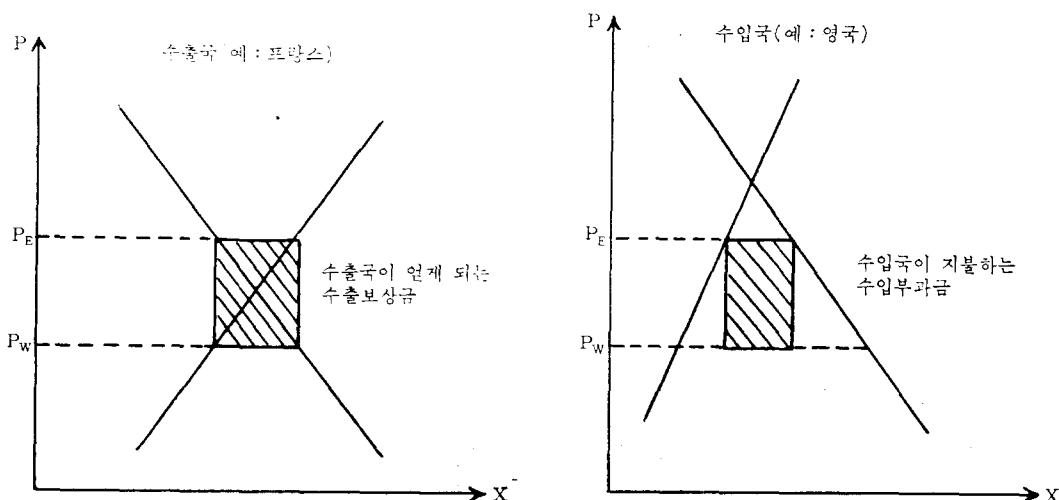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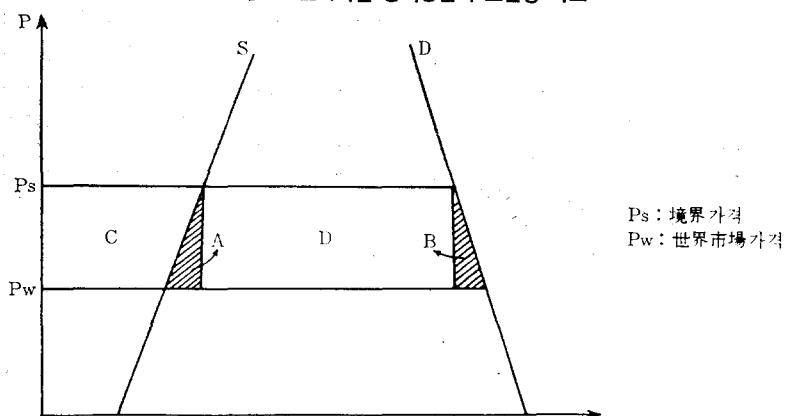


그림 6 소득지원 정책방안의 효율성 비교



	요소분배에서의 손실	국고에서의 지출
농산물 가격정책	A + B	- D
缺損支拂	A	C + A
직접소득 지원정책	B	C

失이 가장 적으므로 효율적인 要素分配가 가능하며 B에 대한 國庫補助가 있을 때에는 要素配分損失이 전혀 없게 된다. 食品 등의 農產物에 대한 需要彈力性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B는 상대적으로 작은 봇을 차지하게 된다.

直接所得補助制에서는 補助支援된 所得額을 다시 生산에 재투자하여 生產力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生産규모의 적정화와 生산의 적정조절을 어렵게 한다. 위의 설명한 代案 외에도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의 대체 또는 병행을 목적으로 하는 生產量割當制에 의한 生產性의抑制 (Produktionsneutralität), 時限的인 生產制約 (Zeitliche Befristung) 또는 農產物價格과 生产량에 따른 減減制가 품목별로 실시되고 있다. 구조적인 生产과잉을 보이고 있는 설탕 부분에 대한 生產量割當制는 (production quotas system) 1975년 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1984년 이후

부터는 生乳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앞으로 곡류의 生产증가에 따라서 1981년부터 지금의 곡류부문에 사용되는 保障限度 生產量制度 (Guarantee Threshold System)과 더불어 시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牛乳 부문의 과잉생산에 대한 生산자 부담을 목적으로 한 責任分擔賦課金制 (Coresponsibility levig system)도 1977년 이후 실행되고 있다. EC내의 農產物生產의 계속적인 증가로 價格支持 및 수출보조에 의한 農業保證基金의 비중은 지난 수년 동안에 EC財政支出의 약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 앞으로 국제農產物價格이 안정되고 EC에서 價格支持政策에 의한 生產向上이 계속될 경우 수출보상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財政負擔이 더욱 增大될 것이고 현재 EC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 회원국의 1% 附加價值稅割當으로는 그 財政充當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1986

년도 예산안에는 1 %의 상한선을 넘은 1.06%의 價值稅率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價格制度下에서는 輸出補償金의 過大支出 및 生산요소의 합리적 분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EC내의 農產物價格을 國際市場價格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農產物價格政策에 의한 共同連帶財政이 約 70 %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이고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構造改善 및 農村開發事業에의 支出은 共同財政의 2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農產物價格支持를 위한 지출이 각 회원국 간에 農產物生產構造의 차이에 따라 保障價格 및 輸出補償金의 배당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결국 價格支持를 통한 보조가 特化(specialization)와 상업화(commercialization)를 주도하는 대규모 농가 위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脆弱地域에 대한 開發支援 문제 및 불균형에 대한 再分配 方案, 그리고 회원국간 通貨換率, 貿易收支에 의해 발생된 財政損益 문제 등 복잡한 經濟的調整對策 수립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EC가 당면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南部 지중해 연안국가들의 EC 신규 가입에 따른 것이다. 1981년에 가입한 그리스와 1986년 신규 가입한 스페인, 포르투갈은 정치적 목적에 가리워 경제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 產業構造가 비슷하고 특히 農業生產構造가 競合的인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新加入國들은 EC 加入으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安定을 염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EC 기존 회원국들은 정치적 협조와 활용, 시장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의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이다. 특히 新加入國들의 경제는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낙후되

어 있고 중소기업 및 手工業 중심의 產業形態를 가지며 높은 潛在失業率, 불충분한 下部構造, 농업의 勞動集約的 生산, 낮은 農業所得 수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EC 新規加入으로 工業部門에서는 자국내의 生産구조가 EC내에서 他會員國에 비해 競爭力이 없으므로 自由貿易에 의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農業農門의 경우는 반대로 農產物價格支持에 의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會員國間에도 工業國의 경우는 이를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환영하게 되고 政策構造가 비슷한 일부 會員國들은 加入을 적극 반대하게 되어, 이와 같은 갈등이 政治的 目的보다도 표면에 나침으로써 EC의 基本構想인 “하나의 유럽” 형성에 장애물로서 작용하여 왔다. 한편 EC 기존 會員국들은 EC內 生產要素의 自由移動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높은 潛在失業率을 가진 新加入國의 가입으로 인해 대규모의 勞動力 移動과 그로 인한 失業, 賃金問題는 이미 현재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는 構造的인 기존회원국들의 失業問題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회원국간에 특히 工業部門에서 有利性을 갖는 몇몇 회원국에게 不均衡的 成長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EC의 連帶財政은 낙후된 新規會員國 經濟開發, 落後地域開發 및 農業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이들 新加入國에의 農產物價格支持 등으로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입된 스페인, 포르투갈은 특히 포도주, 올리브유, 과채류, 곡류 등의 생산이 주를 이루므로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같이 유사한 生產構造를 가짐으로써 이들 既存 會員國들의 반대로 가입이 저연되어 오다가 政治的 目的의 우위성을 앞세운 EC 전체의 흐름으로 타결되었다.

이와 같이 EC의 共同農業政策이 약 30년간 수행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이미 농업의 범주를 벗어난 정치적 차원에 기인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農家의 所得向上과 生產性向上을 위해 실시되었던 價格支持를 통한 農業部門의 保護政策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직 많은量의 農產物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 실정으로서 각 품목, 수단별로 선별하여 가능성 을 연구 탐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보다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도 농업을 보호해 온 유럽 선진 각국들의 정책적 當爲性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며, 長期的 안목에서의 農業發展을 위해 사용되었던 가격—사회정책 등의 所得補助政策과 技術集約的企業農 및 농민후계자 양성을 위해 실시되었던 構造政策이 꾸준히 조화를 이루며 발전되어 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영 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서도 發展 및 유지 가능한 中農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지역간, 농업부문에의 격차를 줄이고자 시도되어 온 간접적인 所得補助의 성격을 띠었던 構造社會政策에 의한 農村의 再編成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農外部門과의 상반관계에 있는 政策意思決定에서도 수직적이 아닌 정책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 조화장치가 있었다는 것도 앞으로 많은 정책적 문제가 대두될 우리의 현실에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국제경쟁력 유지와 생산 효율성 유지 및 그의 실행을 위한 선별적 지원, 자율적 유통구조의 조정 등 농업 발전을 위한 EC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V. 要約 및 結論

“하나의 유럽”으로의 統合을 목표로 출범된 EC는 그동안 각 회원국간의 복잡한 經濟的 利害關係의 대립을 보이면서도 상호간에 성의있는 노력으로 정치적 목적에 성공적 접근을 이루었으며 經濟政策에 따른 生產性 向上과 共同市場의 活性化, 회원국의 經濟發展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EC事業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共同農業政策은 EC 地域의 農業生產性向上과 農村經濟發展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을 통한 生產性向上은 이제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生產過剩 문제로 고민하기에 이르렀고 連帶共同財政에서의 農產物價格 支援金支出比重이 크게 증가하여 財政難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의 所得保障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農產物價格政策도 이제 그 방향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방안이 연구, 제시되고 있다.

共同體內의 造產物價格을 世界市場價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農業構造改善事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며, 이와 같은 견해를 확실히 同感할 수 있었다.

EC의 農產物價格政策이 현재의 상태에서 수정없이 계속될 경우 각국간의 갈등과 共同財政의 不足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支持價格 中心政策에서 市場價格의 基本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過剩供給에 따른 彈力的 價格變動을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生產要素配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잉 생산되고 있는 주요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산물간에 생산의 유리성을 검토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農業共同政策의 방향도 長期의이며 國가적, 地역적, 부문내에서의 계층 및 농가간 所得隔差를 줄이고 平準化시켜 나가기 위한 構造改善事業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農業部門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農業成長을 꾀해 왔으나 이제 부문내에서의 격차가 심해졌고, 품목간 生產性 및 技術의 격차가 커지므로 部門內에서의 脆弱部分에 대한 投資가 技術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변하는 會員國間의 經濟力 變動 및 國際換率調整에 따른 영향으로 회원국간의 自由貿易이 제한을 받고 經濟活動에도 영향이 크므로 효율적인 換率調整과 國際貿易 및 경제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조치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經濟的 利害對立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共同財政造成과 支出에 따른 각 회원국의 得失을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新規加入된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표면상으로는 自國內의 정치적 문제 즉 완전한 政治安定을 이유로 加入許可를 미루어 왔었으나, 경제적 특히 農業生產構造上의 競合的 要素의 利害對立調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회원국과 계속 是非의 爭點이 될 것이다.

따라서 共同農業政策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加入國間의 계속적인 理解와 讓步 그리고 “하나의 유럽”이라는 政治的 目標의 刻浮을 피하지 않으면 EC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며 회원국간의 爭點보다도 對外的 共同防禦에서 얻을 수 있는 利點을浮刻시켜 이를 結束의 道具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参考文獻

- Balassa, B.,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1975.
- Behrens, R. und H. de Haen, *Vergleich der gesamten Produktion des aggregierten Faktoreinsatzes und der Produktivität in der Landwirtschaft der EG-Länder 1963~1976*, Göttingen, 1980.
- Henze, A., *Die Finanzierung der gemeinsamen Agrarpolitik in der EG*, Münster-Hiltrup, 1982.
- Koester, u. and S. Tangermann, *Alternativen der Agrarpolitik*, Münster, 1976.
- Koester, u., *EG-Agrarpolitik in der Sackgasse*, Baden-Baden, 1977.
- Neville-Rolfe, E., *The Politics of Agriculture in the European Community*, London, 1984.
- Lodge, J., *The European Community*, London, 1983.
- Petersen, V., *Agrapolitik und EG-Haushalt*, Münster-Hiltrup, 1983.
- Priebe, H., W. Schepers and W. V. Urff, *Agrarpolitik in der EG: Probleme und Perspektiven*, Baden-Baden, 1984.
- Rohwedder, J., “Welfar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Pioneering Economics, International Essays in Honour of Giovanni Demaria*, Padova, 1978, pp. 915-938.
- Rosemary, 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y*, London, 1979.
- Strasser, D., *Die Finanzen Europas*, Bonn, 1979.
- Tangermann, S., *Agrarpolitische Positionen in den Mitgliedsländern der EG und den Europäischen Institutionen*, Münster-Hiltrup, 1981.
- Thoroe, C., *Die Europäische Agrarpolitik als Finanzausgleichsproblem*, Berlin, 1981.
- von Urff, W. and W. Höra, “Ökonomische Theorie der Erweiterung einer Zollunion,” In *Agrarwirtschaft und Agrarpolitik in der erweiterten Gemeinschaft*, Münster-Hiltrup, 1981, pp. 19-46.
- 서독 재무성, *Finanzbericht der EG*, 1984.
- 서독 농림영양부, *Agrarbericht*, 1986.
- EC집행위원회, 「농업통계연보」, 1986.
- ,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86.
- , *Finanzberichte über den EAGFL*, 1984.
- 金日善, “EEC 공동농업정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농업경제연구」, 제26집, 1985.12, pp. 153-165.
- 許信行, 「農產物價格政策」,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pp. 304-321.
- 농업협동조합, “EC의 공통농업정책과 농업보호,” 「농협조사월」, 1984.1.
- 許信行 外(譯), 「EEC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전환 모색」, 해외농업자료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